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16 선고 2021나844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16 선고 2021나8441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51768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

담당변호사 여봉열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

변론종결 2022. 4. 28.

판결선고 2022. 6. 16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1가단51768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1. 주위적 청구취지

선택적으로,

가.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. 11. 26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1)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. 2. 28. 접수 제29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,

2)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등기소 2019. 2. 28. 접수 제29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,

3)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등기소 2018. 12. 7. 접수 제203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,

4)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게 위 등기소 2018. 12. 7. 접수 제203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.

또는,

가.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. 11. 26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예비적 청구취지

가.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. 11. 26. 체결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130,893,000원과 그 중 130,000,000원에

대하여 2018. 2. 1.부터 2018. 11. 3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,893,000원과 그 중 130,000,000원에 대한 2018. 2. 1.부터 2018. 11. 3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원리금 합계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영호, 판사 이경선, 판사 김리사

별 지

부동산 목록

1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 대 184.1㎡
2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 대 230.6㎡
3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대 136㎡
4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Q 대 135.5㎡
5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 대 987.2㎡. 끝.

